第212回國會 法制司法委員會會議錄 第 1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0年6月19日(月)
場 所 法制司法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幹事選任의件
2. 인사청문회법안

審査된案件

○ 委員長(朴憲基)人事 …… 1面
1. 幹事選任의件 …… 3面
○ 幹事(崔鉛熙·咸承熙)人事 …… 3面
2. 인사청문회법안 …… 4面

(11시21분 개의)

○**委員長 朴憲基**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대 국회 첫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국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立法調査官 文濟豊**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委員長(朴憲基)人事

(11시23분)

○**委員長 朴憲基**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14대 국회 때부터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많은 활약을 해주신 趙舜衡 선배 위원님과 이번 16대에도 또 법사위원회에서 함께 일을 할 수 있어서 기대도 크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법사위원회는 그동안 다른 위원회보다 더 민주적으로 그리고 원만하게 잘 운영되어 온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법사위원회는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 입법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위원회이며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대 법사위원회도 이러한 전통을 잘 이어가서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더 모범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 진행과 안건처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 상호간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위원장석의 오른쪽에 앉으신 위원부터 인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容鈞 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鈞委員** 金容鈞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다음 鄭寅鳳 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寅鳳委員** 鄭寅鳳입니다.

잘 부탁 올리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崔炳國 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炳國委員** 울산 남구 출신 崔炳國입니다.

선배님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 잘 좀 부탁드리

겠습니다. 저도 한 30년간 법조인으로서 외길을 걸어 왔습니다. 우리 趙舜衡 위원님은 제가 여기 법사위 전문위원을 할 때부터 모시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憲基** 다음 崔鉛熙 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鉛熙委員** 반갑습니다.

저는 15대에 이어서 16대에도 법사위원회에 소속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법사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와 달리 상대적으로 상당히 원만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번 법사위원회도 우리 존경하는 朴憲基 위원장님을 모시고 어느 상임위보다도 모범적인 상임위다 하는 얘기를 국민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다음은 裵基善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裵基善委員** 부천 원미을 출신 裵基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朴憲基 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특히 저희 당의 趙舜衡 위원님 그리고 張在植 위원님은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이시고 崔鉛熙 위원님도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이신데 함께 이렇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朴憲基** 다음 宋永吉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永吉委員** 인천 계양의 宋永吉 위원입니다.

선배님들을 모시고 법사위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법조인 생활을 할 때도 항상 고민이 되었던 것은 우리가 법규를 대전제로 사실확정에서 법적 판단을 하게 되는데 법규 자체가 명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에 여러 가지 우리 법적 생활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껴왔습니다.

입법과정에서 보다 충실하게 심의가 되어서 이 법사위가 국회의 질을 높이는 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고 저도 선배님들께 많은 점을 배우면서 막내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張在植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在植委員** 서울 서대문 을구의 張在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朴憲基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선배 동료위원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趙舜衡 위원님 인사해 주시지요.

○**趙舜衡委員** 저는 서울 강북 을구 출신의 趙舜衡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5대에 이어서 16대에 우리 존경하는 朴憲基 위원장을 모시고 위원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래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委員長 朴憲基** 咸承熙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咸承熙委員** 안녕하십니까. 서울 노원 갑구의 咸承熙입니다.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金學元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委員** 자민련 소속의 충남 부여 출신 金學元 위원입니다.

15대 때에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었다가 이번 16대 때 법사위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법사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특히 법을 존중하고 또 법을 아끼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질서정연한 가운데 상임위원회가 잘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신 위원들은 다음 회의 시에 인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 소속되어 여러 위원님들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게 될 수석전문위원과 직원들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회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종두 전문위원입니다.

안병옥 전문위원입니다.

조성욱 입법심의관입니다.

문제풍 입법조사관입니다.

홍승구 입법조사관입니다.

정영조 입법조사관입니다.

조기열 입법조사관입니다.
이상헌 입법조사관입니다.
정성희 입법조사관입니다.
진선희 입법조사관입니다.
이상묵 행정주사입니다.
성용제 행정서기입니다.
(직원인사)

---

1. 幹事選任의件

(11시29분)

○**委員長 朴憲基**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별로 간사 한 사람씩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당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나라당에서 추천해 주신 崔鉛熙 위원과 새천년민주당에서 추천해 주신 咸承熙 위원 이상 두 분을 당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幹事(崔鉛熙·咸承熙)人事

(11시30분)

○**委員長 朴憲基**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분들로부터 다시 한번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崔鉛熙 위원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崔鉛熙委員** 15대 국회에 들어와서 4년간 간사를 했습니다.

아마 이번에 재선 이상이 간사를 한다는 당의 방침에 의해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저희 당에는 법사위에 재선이 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선정된 것 같은데 4년간의 경험을 살려 가지고 또 우리 존경하는 咸承熙 위원이 맡으신다면 잘 협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咸承熙 위원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咸承熙委員** 국회의원으로서는 초심자에 불과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 주신 데에 대해서 영광이기에 앞서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한나라당의 간사이신 崔鉛熙 선배님은 과거 법조시절부터 제가 존경하던 선배이니만큼 저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대선배님이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趙舜衡 위원, 張在植 위원 또 여러 선배위원님들, 앞으로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상 인사청문회법안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법조문이 미타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인사청문회법안을 미리 검토해 주십사 해서 가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 법안이 회부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8분38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憲基**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 오전 회의에서 인사를 못 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金武星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武星委員** 金武星 위원입니다.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법사위로 오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잘 모시고 열심히 배우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朴憲基** 다음 尹景湜 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景湜委員** 청주 흥덕의 尹景湜 위원입니다.

오전에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미처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다음 李源性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性委員** 충북 충주 출신 李源性 위원입니다.

앞으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千正培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正培委員** 경기도 안산 출신 千正培입니다.

우리 국회가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특히 국민들이 많이 소망하는 개혁입법을 순조롭게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오늘 오후에 국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인사청문회법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 의뢰가 있었습니다.

---

2. 인사청문회법안(國會運營委員長 提出)

(18시41분)

○**委員長 朴憲基**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사청문회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千正培 의원 나오셔서 본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會運營委員長代理 千正培** 국회운영위원회 千正培입니다.

인사청문회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립니다.

국회는 이번 16대국회부터 헌법에서 그 임명에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공직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법 제46조의3과 제65조의2의 규정에서 임명동의안과 국회선출안을 심사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이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보며 둘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3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셋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국회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직후보자를 출석게 하여 질문을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고 넷째,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 등에는 임명동의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 외에 학력·경력사항, 병역사항, 재산사항, 납세실적, 범죄경력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며 다섯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공직후보자로부터 10분의 범위 안에서 모두발언을 청취하고 위원 1인당 질문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며 여섯째, 위원이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문 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은 공직후보자에게 서면으로 질문을 할 수 있고 일곱째, 증인 등에 대한 위원회의 출석요구서는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며 여덟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로부터 12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 기간은 2일 이내로 하며,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아홉째, 인사청문회는 공개하되 다만 비공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며 열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공직후보자·증인·참고인 등이 답변·증언 또는 서면답변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비공개요구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하고 열한 번째, 위원은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질문이나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회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秉玉** 인사청문회법안에 대하여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의 수정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위원회가 임명동의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원회에서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절차를 규정한 것이므로 그에 맞게 제1항 법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법안 중 검토가 필요한 사항 내지 참고의견을 말씀드리면, 유인물 5쪽입니다.

안 제3조제3항에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선임의 경우 '교섭단체등의 의원수의 비율'에 의

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회법 제48조제1항에 의한 위원 선임기준 즉 위원선임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고, 다만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의 위원선임은 의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국회법상의 일반적인 규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위원선임에 있어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 등의 의원 수의 비율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인물 6쪽, 7쪽 및 8쪽의 안 제4조제1항, 제7조2항 내지 제5항에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문' 또는 '일괄질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본회의 대정부질문 시 국무위원에 대한 질문을 '질문'으로 규정한 것과 유사한 차원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국회법 위원회 안건심사 절차를 규정한 제58조와 위원의 발언에 관한 제60조제2항 등에서 위원회에서의 위원의 발언은 '질문'이 아닌 '질의' 또는 '일괄질의'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이 법에 의한 공직후보자는 넓은 의미에서 국회법 제64조 및 제65조의 공청회 및 청문회에서의 진술인 또는 참고인의 지위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 진술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질의와 구분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또한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에게 서면으로 하는 질문 역시 국회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안 제4조제1항, 제7조제2항 내지 제5항에서의 질문은 '질의'로 하는 것으로 검토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인물 8쪽 안 제9조제2항에 의하면 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쳤을 때에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20조에 의하여 국회법 규정이 준용될 경우 기간 계산 시 초일을 산입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임명동의안 등의 심사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바로 그 다음날까지 심사경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수정한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정의견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의견대비표는 끝에 실음)

○**委員長 朴憲基**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金學元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委員** 자민련의 金學元 위원입니다.

지금 인사청문회법안 부칙 제2항을 보면 "이 법 시행 당시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국무총리(李漢東)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동법 제65조에 의하여 개회되는 청문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위원회 및 인사청문회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국회법 제46조의3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항을 보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사청문회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모법에 근거해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이번 국무총리(李漢東)인사청문회에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모법도 제정되기 전에 이미 국회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의해서 지금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법이 없이는 모든 구성이나 운영은 무효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무효로 만들어진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그 뒤에 만들어 준 법을 소급했다고 해서 과연 무효인 하자가 치유가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법을 존중하는 국회에서 이와 같은 법을 어거지로 규정해서 만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일단 본 위원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이 이번 국무총리(李漢東)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개최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그 점에 있어서는 일단 저희도 특별위원회에 응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앞으로는 국회에서 이와 같은 절차는 겪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한번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국회법 제128조에 보면 서류제출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는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서류제출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에서 서류제출요구에 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국회법의 하위법이라고 볼 수 있는 인사청문

회법은 서류의 범위를 넘어서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사청문회법 제12조를 보면 자료제출요구라고 해가지고 원래에 만들어졌던 안에서 서류 대신에 자료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 외에 그 밖의 영상자료 같은 것들도 모두 포함되도록 해석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에서 축소로 제한되어 있는 법을 그 하위법에서 더 확대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서류 외에 일반 영상자료 같은 것도 포함시키겠다고 하면 국회법부터 개정해 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여야간 여러 가지 논쟁을 통해 논의가 되어서 인사청문회법안이 수정되어 지금 법사위원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법 제86조에 보면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서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체계와 자구에 관한 심사 외의 내용은 고칠 수 없도록 법으로 명문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사청문회법의 수정된 내용을 보면 체계와 자구의 범위를 넘어서 상당한 정도로 내용을 바꾸어 놓은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전례가 특히 법사위원회에서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신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묻고, 앞으로 이와 같이 오류된 절차는 특히 법사위원회에서 재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단단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憲基**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國會運營委員長代理 千正培**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李漢東)임명동의에 관한 소급적용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국회가 미처 인사청문회법을 마련하기 전에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이 제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야간의 정치적 합의로써 이 부분은 법에 의하지 않고 국회에서의 규정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국회법 제44조에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일반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실제로 성안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칙 제1항에 의해서 이 법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고 지금 대법관 여섯 분이 7월 10일자로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7월 10일까지 대법관 여섯 분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임명동의를 의결하기 위해서 거꾸로 기일을 역산해 보니까 이 법의 공포와 시행이 대단히 시급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만일 오늘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면 앞으로 1주일 이내에 공포 시행해야 될 절박한 사정에 있습니다.

지금 국회 의사일정상 국무총리(李漢東)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회는 6월 26일과 6월 27일 양일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이 만들어져서 공포 시행한 후에 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된다는, 그런 시간순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미 법은 만들어 발효했는데 인사청문회는 법에 의하지 않고 여야간의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하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칙 제2항에 경과조치를 둠으로써 법이 더 늦게, 인사청문회를 결정해서 특위를 만든 것 이후에 시행되었지만 인사청문회 자체보다는 먼저 법이 발효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부칙에 의해 이렇게 간주규정을 두더라도 오히려 이것이 법치주의 원리에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경과조치를 두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金學元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대단히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다른 사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12조의 서류제출 요구문제는 운영위 심사과정에서 자료로 확대를 했습니다. 지금 디지털시대, 정보화시대가 옴으로써 서류 없는 업무처리가 목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서류 이외에 전산자료라든가 영상자료 등을 제출케 하는 것도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필요하고 또 그런 필요성을 인정해서 서류에 한정하지 않고 자료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회 다수 위원들의 견해에 따라서 이렇게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법의 일반규정을 손질할 기회가 있을 때 그쪽을 자료라는 말로 손질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해서도 金學元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충분히 일리가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체계와 자구수정의 문제에 관해서도 金學元 위원님께서 참으로 타당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사청문회법을 오늘 중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만이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여야간에 또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사실상의 협의를 거쳤고 법사위원회에서 자구와 체계의 범위를 조금 넘어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리하는 것도 불가피하고 또 정치적으로는 서로 양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아직 발표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처럼 수정안을 내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金學元 위원님께서 여러 모로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朴憲基**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崔鉛熙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崔鉛熙委員** 제가 법안 시안 과정에도 참여했습니다마는 인사청문회를 우리나라 최초로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험도 없고 해서 입법하는 과정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온 인사청문회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여야간에 협의한 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에서 회부된 법안 제7조에 의하면 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함에 있어서 공직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청취한 후 질문·답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모두발언 전에 공직후보자로부터 먼저 선서를 받은 후에 모두발언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여 그것을 동조 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신설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나는 공직후보자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하는 내용을 제2항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후보자는 선서는 하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징계대상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 제18조 위원의 주의의무 규정에서 위원이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세 번째로 안 제19조 위원의 징계조항에 대해서는 법 체계상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서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 외에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일부 질문, 질의 등 용어의 혼란이 있는 것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그대로 합의해 주시면 법안이 좀더 말끔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 수정의견은 여야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도 오래 기다리고 계시니까 가능하시면 그대로 동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憲基** 崔鉛熙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趙舜衡委員** 제가 잠깐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예, 趙舜衡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趙舜衡委員** 지금 崔鉛熙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다른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심의하실 때 공청회 하셨습니까?

○**國會運營委員長代理 千正培** 공청회 하지 않았습니다.

○**趙舜衡委員** 못 하셨지요?

아시지만 지난번 우리가 정치개혁특위에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국회법을 여러 가지 개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종전에는 공청회가 의무사항이 아니었는데 제58조5항에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또 전문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우리가 입법과정이 너무 소홀하다고 해서 그에 대한 반성으로서 좀 신중하게 여론을 수렴하자는 뜻으로 했는데요.

운영위원회의 사정이 아마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이 청문회법이 제16대국회 법률 제1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운영위원회로서도 아마 제정법률 제1호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단서조항에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예

외적인 경우이고 정말 이것을 생략해야만 될 정도로 시급한 법안이면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가 7월 초순에 있기 때문에 시간도 좀 있었다고 보아서 이미 지난 얘기지만 국회운영위원회가 국회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위원회인데 국회법을 좀 중시해야 됐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國會運營委員長代理 千正培** 답변드리겠습니다.

趙舜衡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타당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법관 여섯 분이 7월 10일자로 임기 만료됩니다. 그런데 만약 7월 10일까지 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대법관 여섯 명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전원 합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우리 사법부가 전체적인 공동화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 법을 만들면서, 아무래도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기간이 약 14일 정도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부터 역산을 해보니까 6월 26일까지는 이 법을 공포 시행해야 될 절박한 사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치면 불과 1주일 뒤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법을 공포하는데 정상적으로는 약 2주일쯤 걸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주일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어쩔 도리가 없이 이번에는 알면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오전에 공청회를 생략한다는 의결을 정식으로 거쳤습니다.

참고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지난 주 금요일입니다. 16일 운영위원장 등을 비롯해서 국회 상임위원장들이 선출되고 원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이 16대 국회의 법안을 심사할 수 있는 첫날입니다. 그러나 오늘 중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한 급박성이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미처 하지 못하고 운영위원회 의결로 생략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너그런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趙舜衡委員** 알겠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간단히 하고 끝내겠습니다.

10조에 보면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심사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서에는 심사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특위도 결국 국회법을 준용하는데 국회법 66조에 심사보고서, 국회의 모든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과뿐만 아니고 심의한 안건에 대한 결과, 법률안을 심의했다면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런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 물론 여야간에 합의를 본 것인데, 우리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도 하나의 회의체로서 어떤 안건을 심의했다면 거기에 대한 최종적 의사결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李漢東 지명자에 대한 동의냐 부동의냐 그것을 인사청문특위에서 청문회 끝난 후에 검토해 가지고 표결을 하든 합의를 보든 어쩌든 동의냐 부동의냐 하는 결과까지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이 절차에 맞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國會運營委員長代理 千正培** 예, 趙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또 그런 문제를 운영위원회에서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요하는 공직자들의 경우, 이를테면 동의를 요하는 공직자들의 경우에는 헌법상 국회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라는 것을 저희는 본회의를 지칭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일부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기재한다고 하면 이것이 결국 본회의의 안건처리에 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있고 그것이 과연 동의권의 소재에 관한 헌법규정에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실천적인 이유로는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결과를 청문특위에서 결정하여야 된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특위 내부에서 이견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서를 둘러싸고 물론 다수의견, 소수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보고서 작성에 상당한 진통과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16대 국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과거 국회의 전례로 보면 극한대결 이런 것들이 우려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심사결과를 기재한다는 일반원칙을 빼고 경과만 기재하게 된 것은 결국 인사청문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객관적으로 특별위원회가 본회의에 보고하고 동의 요청된 또는 선출해야 될 공직자에 대한 동의 또는 선출 여부는 본회의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운영위원회에서 내렸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심사경과만을 기재하게 되었다는 것

을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朴憲基** 위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가 7시로 예정되어 있어서 아마 법사위의 법안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鄭寅鳳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鄭寅鳳委員** 예,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수정안 제7조 제2항에 관해서 발의하신 의원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공직후보자의 선서가 문구에 보면 "나는 공직후보자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전을 들추어보니까 우선 대통령의 취임선서가 있고 또 저희가 며칠 전에 했던 국회의원의 선서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대통령에 당선돼서 또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당당하게 역사와 국민 앞에 선서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나는'이란 말이 들어간 것으로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들추어보니까 '나는'이란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로 나와서 여러 가지 자질을 검증받는 사람이 '나는'이라는 말을 쓰고 '맹세합니다' 이런 말을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과연 공직후보자의 선서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공직후보자가 공직에 취임하기 때문에 여러 부원들이나 국민들 앞에서 선서하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자질을 검증받는 마당에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의 증인과 유사하게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선언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심판을 받고 자질을 검증받는 사람이 거짓을 말하고 또 잘못된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하나도 없이 그저 공직후보자로서 나는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하겠다는 말을 듣는 것 자체는…… 그러면 실제로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거짓된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 양심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하는가에 관한 아무런 규정 없이 그저 선서만 듣는 것으로 소위 인사청문회 위원들이 넘어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청문회 존립 자체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처음 실시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급박성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무런 제재도 없는 선서라면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또 위원들에 대해서 그저 참고로 나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재조치가 빠져 있는 것이 결국 이 법안의 실효성을 지극히 의아스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당연히 2항에는 최소한…… 민사소송의 당사자 본인 신문에도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는 경우에는 허위진술의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당사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직후보자로서 청문회에 나와서 심판을 받겠다는 사람의 허위진술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도 없이 그저 오른손 들고 맹세하는 것으로 끝나서 되겠나 하는 점은 이 법안이 앞으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검토되어야 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수정안을 낸 崔鉛熙 위원 답변하세요.

○**崔鉛熙委員**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 실시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여기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렇습니다. 이 인사청문회법안에 따른 공직후보자는 국가의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인데 이 법안에서 공직후보자는 일반 비리에 관련되었든가 법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국정조사를 받는 대상자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허위진술·답변일 경우에는 제재를 받아야 하느냐, 이 점에 관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지만 결국은 일반 국정조사의 대상자하고 인사청문회법안의 대상자하고는 신분이 기본적으로 다르다 하는 점에서 이렇게 된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선서를 하고 징계대상은 제외하자, 이것이 이 법안의 19조 징계조항이 삭제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직후보자도 진실을 답변하겠다는 국민 앞에서의 맹서이고 또 질의하는 국회의원도 정정당당하게 질의를 해서 혹시 질의내용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징계대상은 곤란하다, 이래서 징계조항을 빼면서 여야의 타협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국회법 24조에 보면 국회의원은 임기 초에 선서를 할 때 "나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공직후보자를 국회의원과 같은 수준으로 "나는"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鄭寅鳳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납득을 하고, 만약에 "나는"이라는 용어가 굳이 적절치 않다면 "본인"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尹景湜委員**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시간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景湜委員** 저는 자구에 관해서 18조 내용을 보면 "위협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질의자의 질의내용이나 태도를 묘사하는 표현인 것 같은데 "위협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다분히 법률용어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증감법에도 보면 "모욕적인 질의"라는 표현은 있지만 "위협적"이라는 표현은 역시 없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질의하는 내용을 "위협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차원적이고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崔鉛熙委員**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이 용어에 관해서 저는 국회법에 있는 모욕적인 발언만으로 족하지 않느냐 했는데 협상은 항상 상대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인 타협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협적"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당초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인데 협상과정에서 위협적일 경우도 있더라, 이것은 왜인가 하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의원 스스로가 입법을 하면서 의원 자신들을 비하하거나 믿지 못한다, 그 소양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은 우리 스스로 상당히 치욕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위협적"이라는 용어를 넣어 달라는 것이 민주당 측 의견인데 지난날에 때로는 이런 일도 있었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받아 주지 않으면 타협을 이루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합의했다는 사실을 좀 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시겠지만 이런 일들이 앞으로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그래요, 鄭寅鳳 위원님하고 尹景湜 위원님 양해해 주시지요?

○**咸承熙委員**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선서내용에 "나는" 하는 것보다 "본인은" 그리고 "맹세합니다."의 이 "맹세"라는 용어가 법률용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崔鉛熙委員** "맹세"는 오타입니다. 내가 "맹서"로 읽었어요.

○**咸承熙委員** 그리고 다른 데는 다 "선서합니다."인데 왜 여기만 굳이 "맹서합니다."입니까? "맹서"라는 용어 자체도 법률용어가 아니니까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했으니까 무엇무엇할 것을 "선서합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맹서합니다." …… 이 "맹서"는 완전히 일상용어 아닙니까?

○**崔鉛熙委員** 위증의 벌을 받을 때는 맹서로 되어 있지요?

○**咸承熙委員** 그렇지 않아도요, 국회의원 선서도 선서입니다.

○**崔鉛熙委員** 취임에는 선서이고 위증의 벌을 할 때는 맹서로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국회증감법으로 오고 거기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委員長 朴憲基** 자구수정 문제에 관해서는 통과해 주시면 나중에 실무자들하고 의논을 해서 모순이 없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崔鉛熙 위원이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제2차 법사위원회를 열어서 감사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2분 산회)

……

(참 조)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인사청문회법안 수정안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 4 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①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국회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직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을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한다. ②(원 안)	제 4 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①위원회의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는……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원안과 같음)

○**出席委員**

朴憲基 崔鉛熙 金武星 金容鈞
尹景湜 鄭寅鳳 崔炳國 咸承熙
裵基善 宋永吉 李源性 張在植
趙舜衡 千正培 金學元

○**出席專門委員및立法審議官**

首席專門委員 金會瑄
專門委員 金鍾斗
專門委員 安秉玉
立法審議官 曺成旭

【報告事項】

○**常任委員選任**

法制司法委員會

한나라당

朴憲基 金武星 金容鈞 尹景湜
鄭寅鳳 崔炳國 崔鉛熙

새천년민주당

裵基善 宋永吉 李源性 張在植
趙舜衡 千正培 咸承熙

어느교섭단체에도속하지아니하는위원

金學元